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 신설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4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 신설	2
2.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신설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제공사업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u>데이터</u>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	11. ----- ----- <u>데이터</u>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영상 등을 ----- ----- ----- ----- ----- -----

현행	개정안
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 17. (생략) <u><신설></u>	-----. ----- ----- ----- -----. 12. ~ 17. (현행과 같음) <u>제42조의2(데이터 제공요구) ① 전</u> <u>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데이</u> <u>터를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u> <u>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u> <u>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사업자 본인</u> <u>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u> <u>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u> <u>1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범위</u> <u>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u> <u>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u> <u>고시한다.</u>

현행	개정안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 제공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 간

1)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 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 짐. 또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조건을 제공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조건(예: 타인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됨.

- 이처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데이터 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빅테크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유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경쟁 장벽으로 활용하여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통한 데이터 격차 해소 제도를 도입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으면, 다른 사업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²⁾에 따른 국민의 행동자유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23조³⁾에 따른 재산권 보장에 대해 제한 소지가 있어 검토의 필요가 있음.

- 국가가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 제공을 하도록 강제하면,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산업이 발전한 정보통신사회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안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견해도 존재함.

- 특히,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나 반대급부의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유도하는 다른 정책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의무화 이

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외의 정책 수단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또한, 동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자도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요구할 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외 각 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국내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데이터가 낮은 비용으로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사업자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사업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국외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법 집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적인 비대칭적인 데이터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하려는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는 정보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4)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의 빅테크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에 비해 많은 국내 매출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법인세 등의 국내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의 보장은 데이터 관련 재산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지니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9조제1항⁵⁾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는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산업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로 의무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져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로 인한 유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타 법률과 정합하지 않고 동 개정안의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데이터는 사업자가 상당한 시간, 인력, 자원 등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결과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는 기업의 핵심 자산에 속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해야 한다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 철수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 유입을 막음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의 침체 및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를 해외 국적 부가통신사업자가 악용하여 해외 국적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시장 장악에 악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 제공 의무 신설은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재산권 보장 제한 소지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가능성과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임.

2.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데이터 제공요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실태조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데이터 제공 현황 파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제공사업자가 보유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실태조사 관련 법률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관련 타법의 자료 제출 요구권 예시 >

법률	조항	자료요구권 내용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제21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법률	조항	자료요구권 내용
관한 법률」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문 의 처
02)6788-5225